

제천시 보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15. 오선균 의원외 4인
 나. 회부일자 : 2011. 2. 16.
 다. 상정일자 : 2011. 2. 21.(제17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오선균 위원)

가. 제안이유

-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 내지 제3조)
 - 조례의 설치목적 및 시장과 보육시설관계자의 건전보육 책무를 규정함
-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안 제4조 내지 제10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임기, 회의개최,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제3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제11조 내지 제19조)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의무, 위수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제4장 보조금의 지급 (안제20조 내지 제24조)
 - 보조금지급항목, 지도감독, 보조금의 환수 등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등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책무, 제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장에서는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장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출산과 보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영유아 보육법이 영유아의 보호, 교육, 건전한 육성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원활화까지 포함하는등 보육정책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 규정도 신설, 강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시의 공립보

육시설 관리운영조례는 상위법령과 정부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제천시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흡수하면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보육사업의 목적을 확대하고, 보육 정책위원회와 취약보육시설설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보조금지급대상 구체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신설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 (답변자 : 오선균 위원, 여성정책과장)

- 질의) 보육정책 위원회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7분 계신데 저희가 제천시에 보면 보육에 관한 연합회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민간하고 법인하고 그런 부분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조례에 보면 보육정책 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위원분들의 강화나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 조례에 맞게끔 우리 위원님들을 조금 임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 조금 더 객관성도 하고 그리고 위원 부분에 있어서 임명하실 때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분야를 생각하셔서 보육전문 쪽에 많은 시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십니까? (김꽃임 위원)

답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영 여성정책과장)

5. 기타의견

“없음”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보육 조례안 1부. 끝.